

1. 제안이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며,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서식을 신설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중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추가(안 제6조제1항제6호나목)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서식(안 별지5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변경 신청서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불법 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시 서면통지서 서식(안 제10조의4 및 별지5호의2서식)

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허용기준 명확화(안 별표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 전부가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형성된 경우로 요건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22. ~ 8.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나목 중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를 “제3조”로, “자가 설치하는”을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1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 관할청이 영 제59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상회복명령서에 따른다.

별표2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를 “설치·운영되거나 다음 각 호 지역 내 10호 이상의”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	-----	------	-----

☐ 공작물설치	☐ 토지형질변경	☐ 토석채취	☐ 토지분할	☐ 물건적치
--------------------------------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창업자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신청인은 뒷쪽의 '작성방법 안내'를 확인하고, 창업자 해당 여부에 √ 표를 합니다.	

(변경)허가신청 사항

위치(지번)	지목
--------	----

용도지역	용도지구
------	------

신청 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현황	경사도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주요수종	
		현황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분할	종전면적	분할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개발행위목적

(변경사유)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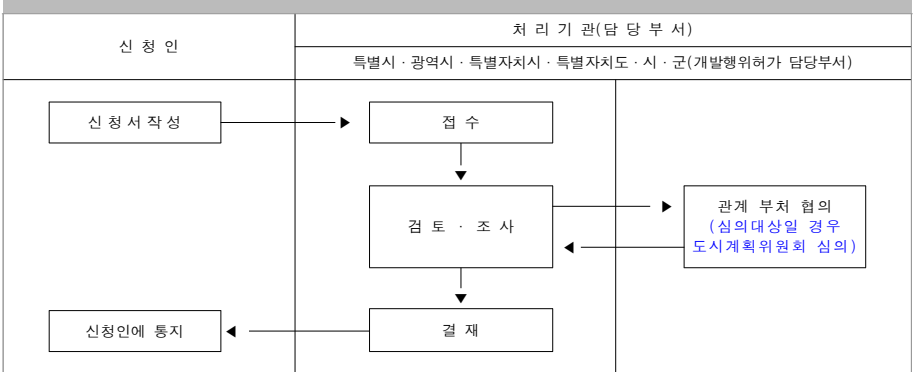
첨부 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사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건축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방법 안내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초소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영역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
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
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
(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원상회복명령서

명령을 받는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반 내용	위반사항
	소재지

명령사항	원상회복면적	m ²
	명령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조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회복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의2. (생략)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생략)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 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라. (생략) 7. ~ 12. (생략) ② (생략) <u><신 설></u>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 ----- ----- ----- ----. 1. ~ 5의2. (현행과 같음) 6. -----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3조 ----- ----- ----- 자 또는 같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가 설치하는 ----- 다.·라. (현행과 같음) 7.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0조의4(원상회복명령의 방법)</u> <u>관할청이 영 제59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상회복 명령서에 따른다.</u>